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테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영문명) TEBA Investment Co., Ltd.
(홈페이지) <https://www.tebainves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18, 테바하우스 2층
(전 화) 02-2138-7176

대 표 이 사 : 백스티브현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백스티브현 (전 화) 02-2138-7172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강예은 (전 화) 02-2138-7176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2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손해배상청구
2. 원고·신청인	테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2025. 5. 9. 임의조정 성립.
4. 판결·결정사유	피고는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테바인베스트먼트 주식 40,000주를 조정참가인곽성림에게 반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2025. 5. 9. 임의조정이 성립됨.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5. 5. 9.
7. 확인일자	2025. 5. 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의 판결·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